

『도시계획시설(묘지공원)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청 원 자 : 410명

○ 구미시 거의동 306번지 임병동 외 409명

2. 소개의원 : 구미시의회 권기만 의원

3. 청원사유(내용)

○ 구미시 옥계동 51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(묘지공원)로 지정된 지 20년이상 경과되었으나, 현재까지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고 있어,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청원인들의 재산권 침해로 인해 조속한 시설부지의 지정 해제를 요구함.

4. 참고사항

- 도시계획시설(옥계공원: 묘지공원) 최초 결정
 - 고시일 : '78. 09. 15 (경상북도 제270호)
 - 면 적 : 350,000m²

5. 검토의견

- 청원인들의 소유토지인 구미시 옥계동 510번지 일대의 350,000m²는 묘지공원으로 '78. 09. 15. 경북도 제270호로 결정 고시 되었음.

- 현재 구역내 이용되고 있는 토지현황을 살펴보면,
옥계동 산 5-1 및 산6-1번지는 공설묘지가 24,495㎡로 조성되어
현재 약 1,400여 묘지와, 하단부 산12번지 일대도 약25,500㎡의
묘지가 개발되어 있고, 그 외 농경지와 해발표고 약130m의 산지
로 형성되어 있음.
-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'12. 4월에 도입되어
그 대상은,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
아니한 모든 시설과,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10년 미만 미집행
시설이 해당됨.
- 그 대상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시기는 매년 정례회
의 기간 중(연1회)이며 제도 도입 후, 최초 보고시 장기 미집행
시설분량을 감안하여 2015. 03. 31일까지 매년 나누어 보고하고,
보고 후 해제되지 아니 한 시설은, 2년마다 재보고 하도록 되어
있음.
- 또한,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의 검
토를 거쳐, 전체회의에서 해제 권고(명칭, 위치, 규모, 해제사유
등 포함)를 의결한 후,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야 함.
-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
는 한,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
시 관리계획결정을 하거나, 상급기관에 그 결정을 신청해야 하고,
- 해제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, 해제 권고 받은 날로부터
6개월 이내에 사유서 등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에 서면으로 소명
해야 됨.

- 아울러, 청원 인이 신청한 묘지공원의 도시계획시설 해제의 건은, 그 결정 고시가 1978. 9. 15일 되었으나, 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” 부칙 제16조 규정의 “경과 조치”에 의하여, 2000. 7. 1일 이전 결정 고시된 경우로서, 기산일은 2000. 7. 1일이므로, 묘지공원은 2020년에 실효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,
- 현재 구미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, 청원인들의 민원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고시지역 전체 면적이 묘지공원의 필요성과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여건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,
- 「구미시 의회 청원심사규칙」 제11조 2항에 의거 “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”에 해당되므로, 본회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의(附議)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